

한방 칼럼

# 拱辰丹 (공진단)

## 1. 공진단이란? (원문 해석)

凡男子方當壯年,而眞氣猶怯. 此乃稟賦素弱,非虛而然,僭燥之藥,尤宜速戒.

(勿足厥逆, 便雲陰多, 如斯治之, 不惟不能愈疾, 大病自此生矣.)

滋益之方,群品稍衆,藥力細微,難見功效.

但固天元一氣,使水升火降,則五臟自和,百病不生,此方主之



하고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여 인체의 오장육부가 스스로 균형을 맞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 3. 공진단은 임금이나 황제가 정말 복용했을까?

그 어떤 문헌에도 공진단을 황제가 복용했다거나, 임금이 복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경옥고(琼玉膏)는 고종황제께서 건강을 위해 꾸준히 복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4. 공진단은 그 누구에게나 다 좋은 보약인가?

예를 들어 중풍,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병이 있다면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두부(머리)에 열이 많거나, 몸에 열이 많고 활동적이라면 공진단을 복용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고, 몸이 허한 사람에게 좋은 약입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대체로 남자가 바야흐로 장년이 되었는데 진기가 오히려 약하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稟賦)소질이 약한 것이지 허해서 그런 것이 아니므로 조(燥)한 성질의 약으로 범하는 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자익(滋益)하는 처방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약의 힘이 약해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다만, 천원(天元)의 일기(一氣)를 굳세게 하여 수승(水昇), 화강(火降)이 잘 되도록 하여 주면, 오장이 스스로 화(和)하고, 백병이 나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 이 처방으로 치료한다.>

## 2. 공진단에 대한 동의보감 기록은 잘 못되었다.

공진단은 송나라 王璠(왕구)가 쓴 방제서 <是齋百一選方(시재백일선방)> (1196년) 제18권 26문에 처음 기재되어 있는 처방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원나라 때의 서인 세의특효방 (1345년)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세의특효방이 원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진단은 몸이 허해졌을 때 모자란 것을 보충해 주는 일반적인 보약과는 다른 약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다 성장한 장년이 되었는데도 몸이 약한 사람에게 타고난 원기라도 튼튼히

아큐베일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 최근 이민국의 심사 경향 (1)

최근 이민국의 영주권 그리고 다른 일반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영주권 신청 또는 신분 변경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경향을 잘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케이스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주의를 요망되는 이민 및 비이민 프로세스 분야에 대한 경향과 대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1.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I-751 Case)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신청인은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 2년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 조건부 해제의 승인에 18개월에서 2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심사 또한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은 경우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나오고 있고 또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에는 이민관이 까다로운 질문 등으로 신청인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지 않도록 결혼이 진실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보여 주는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뷰 시에는 꼭 변호사를 대동하도록 하십시오.



## 2.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

2015년 LA 한인타운 학교의 학생비자 사기 사건 이후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진 분야가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입니다. 과거에는 체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기만 하면 심사 기간 동안 이전 신분이 만료되어도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규정 적용으로 이전 신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30일 이내에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자동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금/생활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잔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은 방문비자(B1/B2) 로의 신분 변경을 학생신분으로의 신분 변경과 함께 신청하는 Bridge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미국에서 공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CA Lns Lic # 0B18537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안내

#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곧 은퇴하실 계획입니까?

10%  
즉석보너스

"과거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중에는 손해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철통같은 원금보장 덕분이지요"

## 401(K) Rollover 은행CD Account 이전

### 철통같은 보장성 연금플랜

증권시장의 위험성을 원천봉쇄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Social Security 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이 보장되는 플랜

- Transfer: 은행CD, IRA Accounts
- Rollover: 401K, TSP등 각종 직장 은퇴플랜

\* 직장을 옮긴 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Account를 하루 속히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신천 보험·재정



# 714.323.7420

Email; choinsurance@yahoo.com

# 8308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